

최신 판례 예규

Marketing Tax

외국법인의 소프트웨어를 직접 다운로드 받아 사용시 해당 영역의 본질적 부분이 국내사업장을 통한 것인지로 국내공급·국내원천소득여부 판단함

외국법인이 제공한 해당 영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사업장을 통해 이루어졌는지를 근거로 판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제과-242, 2023.03.30

질 의

- 국내 고객사가 외국법인의 소프트웨어를 직접 다운로드받는 경우 국외에서 공급한 것인지, 국내사업장에서 공급한 것인지

회 신

귀 질의와 같이, 「법인세법」 제94조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 사업자에게 소프트웨어를 공급할 때, 해당 영역이 국내사업장을 통해 제공되었는지 여부는 외국법인이 제공한 해당 영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사업장을 통해 이루어졌는지를 근거로 판단하는 것이며, 이는 계약내용·계약체결 경위·실제 영역 제공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해외채무자가 해산신고 후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로서 선순위 채권이 과다하여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이 없는 경우 대손 가능

사전법규법인-1254, 2023.03.08

질 의

- 해외 채무자가 해산신고를 하고 선순위담보권자가

존재하여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내국법인의 해외 거래처(채무자)가 해산신고 후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로서 해당 내국법인이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선순위 채권이 존재하여 회수 가능한 금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라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1주택 소유자가 다른 세대원이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건물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더라도 1세대 1주택자를 전제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제3호의 상속주택에 대한 주택수 증부세 특례는 적용될 수 없음

사전법규재산-1003, 2023.01.31

질 의

- 1주택 보유 1세대 내 기존주택 보유한 자가 지방 저가주택의 건물만을 상속받고 다른 세대원이 그 지방 저가주택의 토지를 증여로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8④(3)에 따라 1세대1주택자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

회 신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동일 세대 내 세대원 2인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주택 소유자가 다른 세대원이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건물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산업디자인전문회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회사를 의미함

서면법규법인-3918, 2023.03.08

질 의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시 같은 법 시행령 별표6 제1호나목1)차)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의미
(1안)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회사
(2안)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별표6 제1호나목1)차)에 따른 기관 중 산업디자인전문회사는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회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법원의 판결에 의해 매매대금이 감액됨에 따라 당초 영업양수 시 에스크로계좌에 입금했던 금원 중 감액된 금액 상당액을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은 익금에 해당하지 않음

사전법규법인-1306, 2023.03.10

질 의

- 내국법인이 영업양수 시 잠정 확정된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법원의 확정판결로 매매대금이 사후 조정됨에 따라 당초 매매대금 지급 시 에스크로계좌에 예치했던 금액 중 일부를 회수하는 경우
- 회수한 금액이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신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영업양수 시 매매대금 사후정산 조건부 약정에 따라 잠정 확정된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매매대금 적정여부에 대한 소송의 제기로 법원의 판결에 의해 매매대금이 감액됨에 따라 당초 영업양수 시 에스크로계좌에 입금했던 금원 중 감액된 금액 상당액을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은 영업양수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 것으로 「법인세법」 제15조에 따른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귀 법인이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이 매매대금 사후조정에 따라 감액된 금액을 반환받은 것인지 여부는 영업양수도 계약내용 및 법원의 판결내용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